

## 1.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

- 가. 출입구(문)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
- 나. 출입문 개폐 방향(안·밖 여닫이, 미닫이 등)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
- 다.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
- 라.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

## 2. 출입문 손잡이 :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(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~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)

## 3. 바닥

- 가.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
- 나.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,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
  - 1)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: 1.5센티미터
  - 2)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: 3센티미터

## 4. 비상연락장치

- 가. 공동주택: 거실,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
- 나. 단독주택 등 : 거실,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

## 5. 현관

- 가.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(燈)을 설치할 것
- 나.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·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
- 다. 마루귀틀에는 경사로(유효폭 1.2미터 이상,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)를 설치할 것[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(뇌병변 장애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

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(이하 "장애인등"이라 한다)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]

## 6. 거실

- 가. 바닥면에서 1.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 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(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나.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~ 900럭스(lux)로 하고,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정보기를 설치할 것(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## 7. 부엌(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가.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
- 나.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.2미터 높이 내외일 것

## 8. 침실 : 조명 밝기가 300 ~ 400럭스(lux)일 것(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## 9. 욕실

- 가.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
  - 1)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
  - 2)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
  - 3) 위·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
  - 4) 좌변기, 욕조,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(L자형,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)를 설치할 것(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)
  - 5)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,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
  - 6) 욕실 바닥에서 1.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
  - 7)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
  - 8)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

나.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

- 1)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
- 2)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(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,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)

**10. 재래식 화장실 개조**(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- 가.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
- 나.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
- 다.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

**11. 참고 사항**

- 가.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【별표 1】 「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」
- 나.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【별표 1】 「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」
- 다.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,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

**붙임 2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**

| 구분    |         | 설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대상(신청시)            | 지원 여부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공통 사항 | 출입문     | ○ 통과 유효너비 90cm이상<br>○ 옆에 60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출입문 손잡이 | ○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바닥      | ○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바닥 높낮이차 | ○ 제거 원칙<br>○ 1.5cm 이하(방풍턱 설치 시)<br>○ 3.0cm 이하(현관에 마루귀를 설치 시)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비상연락 장치 | ○ 관리실,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현관    |         | ○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측면에 75~85cm 높이에 수직·수평손잡이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마루귀틀에 경사로(유효폭 1.2m 이상)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체장애인(뇌병변포함)/휠체어 사용자 |       |
| 거실    |         | ○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(1.2m 높이 내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체장애인(뇌병변포함)/휠체어 사용자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조명밝기 600~900럭스(lux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각장애인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부엌    |         | ○ 좌식 싱크대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체장애인(뇌병변포함)/휠체어 사용자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가스밸브 높이 조정(1.2m 높이 내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침실    |         | ○ 조명밝기 300~400럭스(lux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각장애인                |       |
| 욕실    |         | ○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좌변기, 욕조, 세면대,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(L 또는 -자형) 설치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, 미닫이문, 미서기문으로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수건걸이 설치(욕실 바닥에서 1.2m 높이 내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체장애인(뇌병변포함)/휠체어 사용자 |       |
|       |         | ○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\* 장애의 유형 및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화장실 내부 이전, 도배 및 마당 포장공사 등 연계보수, 휴한·서기 냉난방시설 등 설치도 가능